

2024년 미디어콘텐츠 마케팅사업(중국) 수행기관 모집 공고

미디어커머스시장(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국 온라인수출을 지원하는 미디어콘텐츠 마케팅사업의 수행기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개요

- ☐ (목적) 중국 내 주요 플랫폼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채널 확보 후 정기 라이브 방송 및 프로모션 연계를 통한 연중 상시 판매지원
- ☐ (모집규모) 2개사 이하
- ☐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중소기업 70개 내외
 - * 참여기업 당 부가세 포함 평균 지원금: 800만원 내외
 - (지원방식) 타오바오(티몰) 또는 도우인, 콰이쇼우를 기반으로 미디어 커머스 및 연계 프로모션을 통해 한국제품의 연중 상시판매 지원
 - (사업기간) 선정일 ~ 2024년 12월말(결산 및 사후관리 기간 포함)
 - * 사업비 집행기간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정부예산 정산 및 결산일정 고려)
- ☐ 주무부처/운영기관: 중소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세부 수행내용
 - ① (전용채널 확보) 타오바오(티몰) 또는 도우인, 콰이쇼우 계정을 통해 정기 라이브 방송판매 일정 편성 및 연계 프로모션 추진
 - ② (참여기업 추천) 타오바오(티몰) 또는 도우인, 콰이쇼우에서 판매 가능성이 높은 기업(상품)을 발굴·추천 후 중진공이 최종 선정

- 수행사별 사업규모는 직전년도 실적, 최근 3년간 매출액, 전담 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협의 후 협약체결
 - * 사업 성과분석,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기업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 절차 필요
 - 수행기관 추천 기업과 중진공 발굴 수출유망기업 등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하되, 정책목적에 따라 선정목표(쿼터) 부여 가능
 - 참여기업의 중도 사업 취소·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행기관은 추가 사업참여 기업을 발굴하여 중진공에 추천 가능
- ③ **(콘텐츠 제작)** 참여기업 제품별 미디어 커머스에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소비 문화·트렌드 맞춤형 브랜드 콘텐츠 제작
- * (예시) 현지 문화와 연계한 브랜드스토리 / 인플루언서의 언박싱, 제품체험 숏클립 등
- ④ **(사전마케팅)** 정기적인 라이브커머스 및 쇼핑몰 바이어대상 제품 소개, SNS 등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 ⑤ **(라이브커머스)** 자체(또는 협력) 인플루언서 Pool과 참여기업(제품) 매칭 후 브랜드 콘텐츠 등을 활용한 정기 라이브 방송판매 추진
- 인플루언서 등급별(팔로워수 기준) 라인업 및 참여기업 사전 매칭 후 방송판매 실시
 - 전문 인플루언서 등급별·일정별·품목별 방송판매 지원기업수*, 판매실적(총액, 실적발생 기업 비중) 목표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 제시
 - * 팔로워수 10만 이상의 유력 인플루언서 방송판매 지원기업 비중 최소 30% 이상, 또는 전체 참여기업수 중 방송판매 지원기업수 비중 최소 50% 이상
- ⑥ **(콘텐츠 활용교육)** 참여기업의 자체 미디어콘텐츠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활용, 현지맞춤 브랜딩 등 교육·멘토링 병행지원
- * 제품 홍보 페이지 제작, 브랜드 콘텐츠 제작·활용 요령 등 (연중 2회 이상)

⑦ (연계 프로모션) 플랫폼과 연계하여 미디어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현지 기획전, 판촉 마케팅 등 사전·사후 연계 프로모션 운영

- (사전 홍보) 대형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라이브커머스 효과 극대화(당일 접속자수↑) 등을 위한 사전 예열마케팅 프로모션

◇ 유명 왕홍 출연 예고편 노출, 판매상품 라인업 홍보(사전 예약판매), 한류콘텐츠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연계한 쇼핑시즌 특별 이벤트, 공동기획전 등

- (사후 Sales-Push) KOL(Key Opinion Leader) 방송 판매 후 KOL 활용 콘텐츠 확산 마케팅(SNS) 등 사후 지속 판매 프로모션 지속

◇ (Sales Push) 기존의 1회성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벗어나, 대형 인플루언서의 브랜드 홍보를 통한 광범위한 노출 후 유망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지속적인 판매연계

- (온·오프연계) 현지 오프라인 매장 등을 활용한 연계 프로모션 추진

⑧ (모니터링) 전담인력의 사업 추진 일정 관리, 판매성과 분석(기업별), 추진실적 및 계획 월간 보고 등 연중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성과목표)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참여기업의 수출액 목표

○ (인정기준) 사업기간 내 참여기업 제품의 라이브커머스 판매액 및 사전·사후 프로모션을 통한 판매액 합계 (자체 및 직접연계 플랫폼 포함)

○ (수행조건) 지원기업의 60% 이상 수출액 발생 (일부 기업 편중 방지)

* 참여기업 추천·선정 시 수출단계별 기업 비중 등 가이드라인 추후 공지

□ (사업비 지급·정산) 참여기업 제품에 대한 콘텐츠 제작, 미디어 커머스 채널 운영 및 사전·사후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총 사업비 중 최대 60% 기준의 정부지원금을 수행기관에 지급·정산 (참여기업 당 부가세 포함 800만원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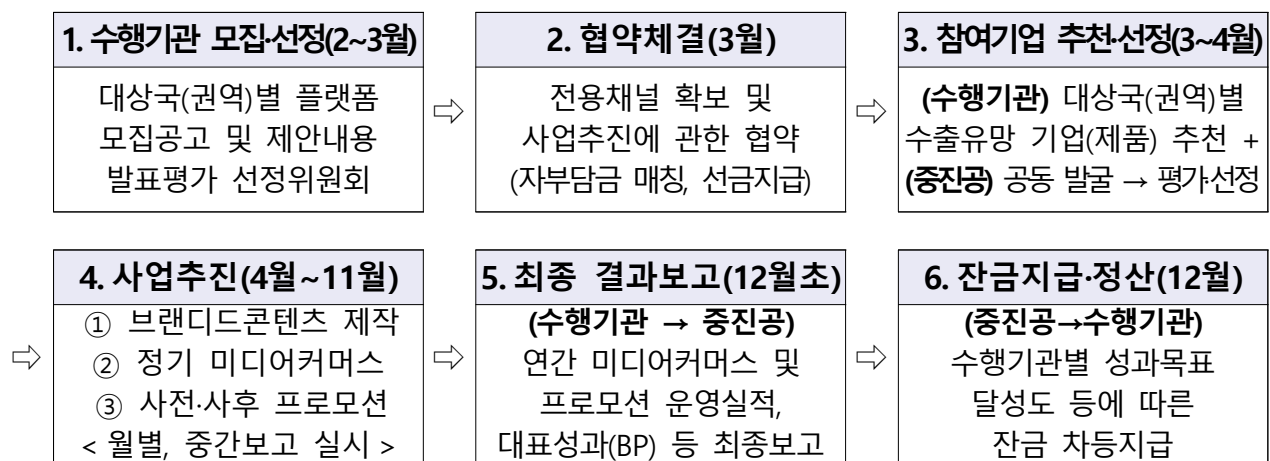
- 선금 지급 후 성과목표 달성도에 따라 잔금 차등지급 가능

○ 총 사업비 중 40% 이상은 수행기관에서 사업비 매칭* 방식으로 자부담

* 자체 마케팅 등 현물지원, 외부 마케팅 소요비용 포함

- 당초 사업비 매칭액 기준, 최종 정산시 자부담 비율이 40% 미만인 경우 정부지원금의 잔금에서 차감 후 지급
- 사업 완료 시, 최종보고서 및 지출한 정부예산, 자부담 내역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또는 회계감사 의견서 등 자료 제출 필수
 - *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감사가 불가할 경우, 기업 자체 회계사의 내부 회계감사 의견서 또는 그에 상당한 공문으로 갈음 가능
 - ** 국문이 아닐 경우, 국문으로 번역한 후 공증 확인 필요

□ 추진일정



* 사업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타오바오(티몰) 또는 도우인, 콰이쇼우 계정 보유·운영 중인 국내에 지사 또는 본사를 둔 기업

- 타오바오(티몰) 또는 도우인, 콰이쇼우 공식 파트너 자격(예: 티몰 TP)을 보유 하거나 공식 파트너사와 공동 참여 가능한 기업
- 타오바오(티몰) 또는 도우인, 콰이쇼우를 활용해 전용 미디어 커머스 정기 편성·운영, 플랫폼 연계 프로모션 직접 기획·운영이 가능한 기업
- 최근 3년 내 정부 유사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동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체 전담인력(5인 이상)을 갖춘 기업 등

* 단, 중국내 본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 최근 3년 내 한국 상품 판매실적을 유사사업 수행경험으로 인정 (공식파트너사의 판매실적 포함)

< 신청제외 대상 >

- ① 휴·폐업 기업
- ②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④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동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
- 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 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 ⑦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⑧ 신청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신청 제외

3. 신청 · 접수 및 평가 · 선정

□ (신청기간) 2024.02.27.(화) ~ 2024.03.12.(화), 18:00까지

□ (신청방법)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 ① 수행기관 신청서 (양식 : 붙임 1)
- ② 사업수행계획서 (양식 : 첨부)
- ③ 제안서(발표자료는 PPT 등 자유양식으로 작성)
- ④ 기업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및 정보 활용동의서 (양식 : 붙임 2-1, 온라인동의)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 붙임 2-2)
- ⑥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양식 : 붙임 3)
- ⑦ 사업자등록증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⑧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기준,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기준
- ⑨ 최근 3개년('21~'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텍스 발급)
* '23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 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기업신용조사기관 발급분)
- ⑪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실적 증빙자료 ('21, 22년)
- ⑫ '23년 라이브방송 수행실적 증빙자료(방송횟수, 방송 연계판매실적 등)(양식 : 붙임 4, 4-1)
- ⑬ 최근 3년간 정부 온라인수출사업 참여실적 또는 한국상품 판매실적 관련 증빙자료
- ⑭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총사업비 사용계획서 (양식 : 붙임 5)

※ 추후 평가를 위해 추가서류 요구 가능

※ 사업신청 주체가 중국법인일 경우 ⑦~⑩ 은 한국지사의 자료도 제출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 (1차 서류심사) 신청서, 제안서 등 제출서류 검토

○ (2차 발표평가) 제안서 발표평가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위원회 : 학계, 산업계 및 유관기관 등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

< 발표평가 PT자료 작성(안) >

※ 양식 : PPT

※ 작성 분량 : 제한없음 (발표 15분 / 질의응답 10분)

※ 주요내용 (붙임4 평가기준 참고)

- ① 제안사 현황 : 연혁, 규모(매출액, 종업원수 등), 조직도, 유사용역 수행경험 등
- ② 수행능력 : 수행가능 규모, 전담인력 투입 및 배치 계획, 타오바오(티몰) 또는도우인, 콰이쇼우와의 협력관계
- ③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 참여기업 발굴계획 / 세부지원 프로그램(안) / 플랫폼(타오바오(티몰) 또는 도우인, 콰이쇼우)과의 공동 프로모션/ 성과목표 달성 계획 / 자부담금 매칭 및 정부예산 정산 계획 등
- ④ 사업운영 및 관리방안
- ⑤ 기타 제안사항 등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통보 후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중진공의 타 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처분통보를 받은 경우, 언제든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온라인수출처의 추진 사업 참여기업의 특수관계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은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선정이 취소되며, 정부예산 환수·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특수관계기업 : ①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②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기업 등

□ 사업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 전화 : 02-2130-1482, 1485

○ E-Mail : donghyun.lee@kosmes.or.kr / thumb@kosmes.or.kr

□ 신청시스템 문의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 전화 : 1588-6234

○ E-Mail : gobiz@gobizkorea.or.kr

【붙임 1】수행기관 참가 신청서

2024년 「중국 미디어콘텐츠 마케팅사업」수행기관 신청서

기 업 명				설립년도	년 월 일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e-mail	
주 소		(도로명 주소) :			
지사(국내외)					
플랫폼명				사이트 주소	http://
담당자	성명/직위			휴대전화	
	전화번호			이메일	
매출 규모		2021년	2022년	2023년	상시종업원수
매출액 (재무제표)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국내 ()명 해외 ()명
온라인 판매실적	중국	천\$	천\$	천\$	
	중국이외	천\$	천\$	천\$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미디어콘텐츠 마케팅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자 동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기업명

대표(이사)

(인)

- (1)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 불성실하게 기재한 경우 탈락
(2) 선정 통보 후에도 자료제출 등의 협조가 불성실한 경우 선정 취소 가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사업 수행계획서

1. 수행기관 개요

☐ 대표자 이력사항

기 간	기 업 명	주요 경력
~		
~		
~		

* 주요경력(근무처, 직책, 근무기간) 명시

☐ 회사 연혁 및 경영실적 지표

○ 회사 연혁

년 월	주요내용(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이전, 해외조직 설립 등)

○ 경영실적지표

(단위: 백만원)

지표명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주요사업 영역

☐ 조직 및 인력보유현황

○ 조직도(본사 및 지사 구분)

○ 인력보유현황

○ 플랫폼(타오바오(티몰) 또는 도우인, 콰이쇼우)과의 협력현황

☐ 전담인력 투입계획(업무 수행 예정인원 모두 기입)

○ 전담인력의 자격 등 요약표

구분	성명	연령	본 사업 참여직위, 업무	최종학력 (학위, 전공)	자격증 (분야, 등급)	경력기간 (년)
PM						

○ 전담인력 이력사항(업무 수행 예정인원 모두 기입)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전공(학사)			해당분야근무경력			
	전공(석사·박사)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	

주요 경력				
근무처	최종 직책	근무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비고

2. 사업 수행 계획

□ 제안 개요

- 제안 목적 (수행범위 및 과업 수행계획 제시)
- 수행 전략 (사업방향 및 전략 제시)

□ 세부 제안 내용

가. 참여기업 발굴 및 추천 계획

- 플랫폼 내 입점하여 활동 중인 중소기업 혹은 판매대행 중인 중소기업 추천

나. 미디어커머스 및 프로모션 운영계획 (중요)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참여기업 수×8,000천원)과 수행기관의 자기 부담금(최소 40%)을 포함하여 작성
 - * 예시) 사업비 10억 = 중진공 6억 + 수행기관 4억(최소 40% 이상은 수행기관의 자부담으로 하며, 정부예산은 평가등급에 따라 가감 조정)
- 전체 참여기업 중 ③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기업의 비중을 최소 60% 이상으로 충족하도록 작성
 - * 제품 홍보(리뷰) 동영상, 상품소개 페이지, 브랜드 스토리텔링 등. 단, 라이브커머스 녹화 동영상은 제외. 필요 시 운영기관과 협의.
- 전체 참여기업 중 ④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하는 기업의 비중을 최소 20% 이상으로 충족하도록 작성
- 전체 참여기업 중 ⑤참여기업 교육 또는 ⑥ 연계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기업의 비중을 최소 20% 이상으로 충족하도록 작성
- 플랫폼(타오바오 또는 도우인, 콰이쇼우)과 공동 프로모션 계획
 - ※ 수행기관은 모든 지원기업에 대하여 상기 ③~⑤에 해당하는 서비스 중 적어도 1개 이상은 수행하여야 함
 - ※ 수행기관은 기관별 특화 마케팅 방식에 따라 제시된 기준의 5%수준 내외로 조정할 수 있음

다. 자기부담 비율 설정(최소 40% 이상 제시)

- 자체 마케팅 등 현물지원, 외부 마케팅 소요비용만 인정(인건비 제외)
- 사업 미참여 기업의 단가를 제시하고,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예산활용계획을 제시할 것

라. 성과목표 제시 및 달성 방안

- (재신청 수행기관) 하기 ① 또는 ② 중 높은 수치를 적용하여야 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실행계획 제시

① '24년 지원기업 평균 판매액이 직전년도 지원기업 평균 판매액 대비 최소 110%이상

※ 목표 : ('23년 지원기업 총 판매액/지원기업 수)*110%* '24년 지원기업 수

② 정부투입예산의 최소 5배수 이상

- (신규 신청기업) 정부투입예산의 최소 5배수 이상을 제시하여야 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실행계획 제시

- (공통) 참여기업의 중도해지 방지 방안 및 추가 참여기업 발굴 계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의 연계사업 추진 협조 계획안 제시

마. 사업비 정산

- 사업 완료 시, 당해 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 내역의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회계감사 의견서 제출 방안 제시

※ 외부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할 경우, 자체 회계사의 보고서 또는 그에 상당한 공문으로 갈음 가능

- 사업 추진 실적(우수 또는 미흡)에 따른 피드백 도출 방법 제시

【붙임 2-1】 기업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개정 2024. 1. 9.>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 귀중

본인은 중기부·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 및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등)를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kr.gobizkorea.com),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및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및 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중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기타 신용정보(국세, 지방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등에 기재된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따른 과세정보(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 수 등), 기타 지원사업 추진, 관리, 상담, 업무처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 직간접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센터,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조회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수출성과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 및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등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등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채무, 납세실적 등), 재무현황(재무제표 등) ▶ 직간접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등 ·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국세기본법 제 81조의13의 과세정보(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 수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중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 등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신용조회회사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중소기업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등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중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 기타 신용정보(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 직간접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중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공급기업, 공급액, 문서번호, 발급일 등) ▶ 중소기업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관(중기부, 국세청, 관세청, 고용노동부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제공·조회 목적	▶ 중기부·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중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료 등),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 수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기부·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기부·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4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전자서명)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기부·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붙임 2-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개정 2024. 1.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 귀중

중기부·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기부·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중기부·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사업, 평가 및 지원 이력관리,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 지원 이력 정보 제공, 고객만족도 조사, 성과측정,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체납정보(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서류)에 기재된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u>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u>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중기부·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사업에 관한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정부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지원사업 위탁 수행사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정부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 지원사업 위탁 수행사 : 중기부·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업무의 수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 위탁 수행사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체납정보(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담당자 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운영기관(중소벤처기업연구원) · 개인식별정보(대표자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u>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u>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4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전자서명)
연락처	() -		

청 령 이 행 서 약 서

당사와 당사의 임직원은 부패방지 및 청렴 활동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정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 사업 참여 신청, 평가, 선정 또는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사업수행 과정에서 관련 기관 및 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체결 이전에는 사업 결정 (선정) 취소, 협약이행 전에는 협약취소, 선정 또는 협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선정 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감수하여 민·형 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 . .

서 약 자 : 기업명 ○○○ (인)

【붙임4-1】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1. “수행실적 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이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2.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붙임4-2】 수행실적 증명서

유사용역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총 사업금액(원)	이행실적
				비율(%) 금액(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4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서명)	
① 계약기간 2021~2023년에 진행된 유사용역실적만 기재함 ②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함(※발급기관 직인 필수) ③ 중진공 사업 중 발주처가 온라인수출처인 경우 증빙제출 불필요				

총사업비 사용계획서

☐ 사업명 : 2024년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사업

☐ 신청기업명(플랫폼명) :

☐ 총사업비 : 000,000,000원(VAT 포함)

☐ 사용계획

구 분	세부항목	산출근거		총사업비	예산활용계획	
		단가	수량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소 계(A)						
일반관리비(B) *A의 5%까지 인정						
총 계(C=A+B)						
부가가치세(D=C×10%)						
총 사업비(E=C+D)						

* 총 사업비는 50개사 기준으로 작성하며, 정부지원금(60%), 자부담금(40%)의 합으로 구성

* 인건비는 총 사업비 중 최대 40%까지 인정하며 전담인력 중 고용보험 등재인원 및 급여대장 등 관련 서류대조 예정

【붙임6】 미디어콘텐츠 마케팅사업 수행기관 서류 평가기준

「중국 미디어콘텐츠 마케팅사업」 수행기관 서류 평가기준

□ 공통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기본요건	서류 완결성	신청서 및 제반 징구서류 완비 여부						한 가지라도 부적격 시 자동 탈락
	지원제외대상	신용불량기업, 국·지방세 체납여부 등						
	자격요건	- 글로벌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플랫폼 가입 회원 수 100만명 이상 기업 - 최근 3년 내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기업 - 사업 추진을 위한 5인 이상의 자체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가점	목표초과달성	- (재신청) 직전년도 목표 초과달성 기업						차등
		달성률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 초과	
		가점	1	2	3	4	5	

□ 신규 신청기업 ('23년 미 참여 수행기관)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정량평가	경영평가	- 기업신용평가등급 등 경영평가	10
	수행경험	- 업력 및 최근 3년내 정부사업 참여실적	30
	수행역량	- 전문인력 보유현황	20
합 계			60

□ 재신청기업 ('23년 참여 수행기관)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정량평가	경영평가	- 기업신용평가등급 등 경영평가	10
	수행경험	- 업력 및 최근 3년내 정부사업 참여실적	15
	수행역량	- 전문인력 보유현황	20
	수행실적	- 직전년도 사업수행실적	15
합 계			60

※ 가점 한도는 최대 5점으로 함

※ 정량평가의 최저점은 배점의 70%, 정성평가의 최저점은 배점의 60%를 부여함

「중국 미디어콘텐츠 마케팅사업」 수행기관 발표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정성 평가	수행능력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수행 적합성 - 인력, 자원 투입계획 적정성	30
	지원역량	- 사업수행 우수성(성공사례) - 수행기관 제시 자기부담 비율의 적정성 - '23년 라이브커머스 추진실적	30
	수행계획	- 참여기업 발굴 및 추천계획 - 콘텐츠 제작·활용, 라이브커머스 및 연계프로모션 등 마케팅 수행계획의 적정성	25
	성과창출	-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가능성 등 - 사업비 정산계획 - 사업추진실적 결과 피드백 방법	15
합 계			100

※ 정량평가의 최저점은 배점의 70%, 정성평가의 최저점은 배점의 60%를 부여함

※ 총점은 100점으로 하고, 40점으로 환산하여 서류평가 점수와 합산함